

●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-8호

「전파법」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「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」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-23호, 2015.11.1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28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(이하 “측정기준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.

②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「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」에서 정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에 적용한다.

제3조(측정방법) ①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은 별표1의 「귀

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」와 별표2의 「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」를 적용한다.

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방송통신 국가표준이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, 국제전기기술위원회(IEC),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(IEEE)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국립전파연구원장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(2005. 12. 5.,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-114호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6. 2., 전파연구소고시 제2008-16호)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12. 29., 전파연구소고시 제2010-45호)

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6.,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-23호)

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1.11.,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-17호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4.24.,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-10호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1.13.,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-23호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이 고시를 시행함과 동시에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2-43호(2012.12.6.)를 폐지한다.

부 칙(2017.8.28.,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-8호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